

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운영규정

(제정 2016. 5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연구개발특구내 사업화 유망아이디어 발굴,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업화 유망아이디어 발굴 및 공공기술 연계
2. 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운영
3.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 및 투자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
4.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
5. 그 밖에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장은 창업보육센터장이 겸직한다.

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매니저) (예비)창업자들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단에 매니저를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로 갈음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단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재정)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본교 자체 지원금, 용역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